

2022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지원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의 패키지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손용희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 지원
 -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나. 지원방법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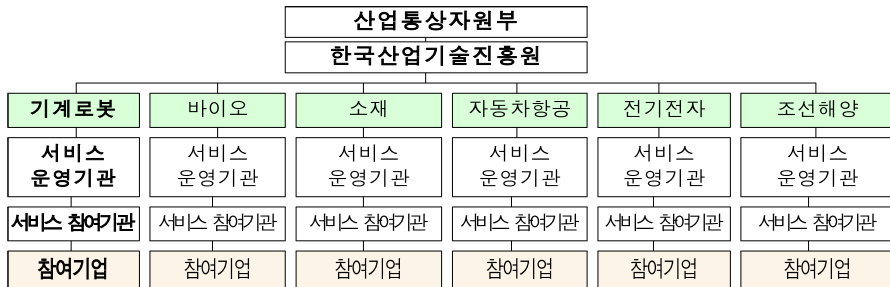
다. 지원기간 : 선정일 ~ '22. 12. 16 이내

* 선정 이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체결 기간에 기준함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붙임2 지원(신청)제외 대상 참고

마. 지원체계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중심으로 기업 지원



2.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가. 지원내용

- 기계로봇 업종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험·분석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래 패키지서비스를 지원

< 기계로봇 업종 패키지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패키지서비스명
로봇	제조서비스용 로봇 액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건설기계	지능형 건설기계용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및 부품
사출금형	플라스틱 사출금형용 고정밀 부품
공작기계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

나. 수행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패키지서비스명
제조서비스용 로봇 액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건설기계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패키지 서비스
플라스틱 금형 복합공정 패키지 서비스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의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다. 지원방법

- 해당 서비스 분야별 패키지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기술 지원 신청시 필요 서비스 선택)
- 지원금 기준, 기업부담금 30% 이상의 사업비로 서비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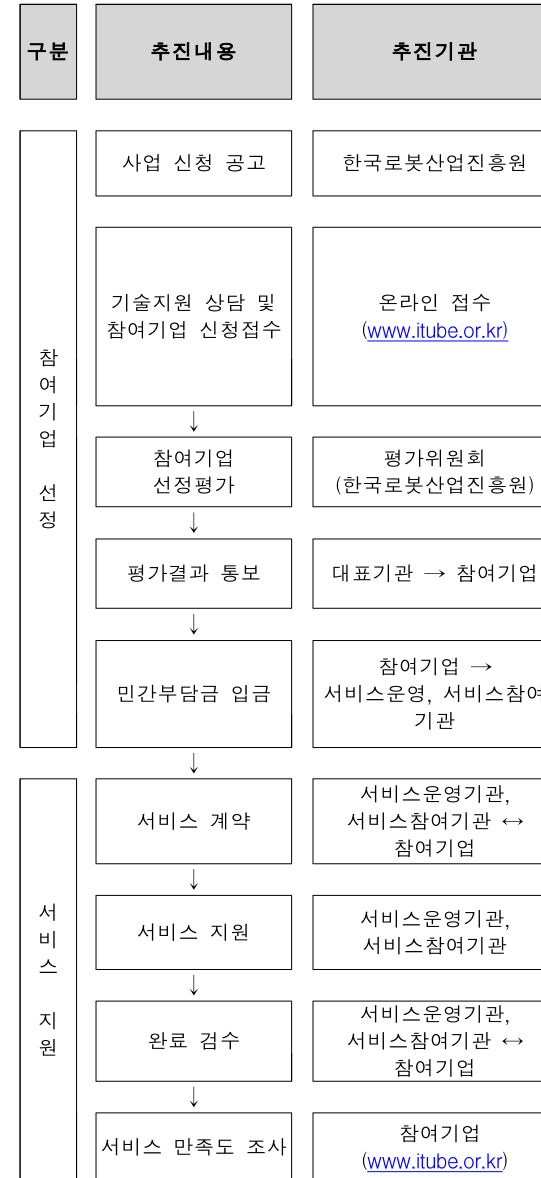
서비스 분야	패키지서비스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로봇	제조서비스용 로봇 액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기업당 8백만원 내외 (6개社 내외)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건설기계	건설기계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패키지 서비스	기업당 33백만원 내외 (2개社 내외)	
사출금형	플라스틱 금형 복합공정 패키지 서비스	기업당 16백만원 내외 (4개社 내외)	
공작기계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의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기업당 12백만원 내외 (6개社 내외)	

* 정부지원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예) 패키지서비스 비용 1,000만원 = 정부지원금 700만원(70%) + 민간부담금 300만원(30%)

- 참여기업신청서 작성시 기관별 담당자와 지원 범위 및 일정 등 상세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작성
- 동일 기업이 다른 서비스 분야 중복 신청·선정 가능

3. 지원절차 및 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 공지 및 상세·변경 일정은 i-Tube 통해 확인

* 2차 공고는 1차 선정 및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미공고 가능

4. 참여기업 선정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표평가 실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신청내용의 적합성	- 기술개발, 애로해결 등 해당 서비스 필요 내용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주요산업 또는 신산업과의 부합성	15
	사업 목표 명확성	- 목표달성 가능성 및 기술 목표의 구체성 - 서비스 이후 기술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수행 내용 타당성	- 서비스 추진내용의 타당성 - 기관간 인프라 활용 및 연계의 적합성	15
	시급성	- 기술개발, 애로해결의 시급성	15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기술개발, 고장 감소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나. 평가결과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가. 접수처

- 접수기간
 - (1차) 2022. 8. 1. ~ 2022. 8. 19. (마감일 24:00까지 접수 분 인정)
 - (2차) '22. 9. 1. ~ 9. 16.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itube.or.kr, 아이튜브)
 - * [붙임]참여기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 관련문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장대철 책임(053-210-9635, iamdaechul@kiria.org)

나. 상담 및 문의처

서비스 분야	수행기관
로봇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천산업진흥원
건설 기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산업진흥원
공작 기계	창원대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다. 시스템 문의처

구분	전담기관
온라인 시스템 (i-Tube)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Tube 유지보수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붙임 1. 참여기업 신청서
2. 지원(신청)제외 대상

* 붙임1) 참여기업 신청서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참 여 기 업 신 청 서**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설 립 일 자	년 월 일	기 업 행 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업 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지식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시종업원수 (직전년도기준)	명
	자 본 금 (직전년도기준)	천원	매 출 액 (직전년도기준)	천원
	주생산물			
주 소	(-)			
신청 서비스	업 종	기계로봇	서비스분야	신청하려는 패키지서비스 분야 기계(광고문 참고)
			패키지서비스명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핸 드 폰	() -	E - m a i l	@
담당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핸 드 폰	() -	E - m a i l	@
<p>「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서비스 공고문」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p> <p><참고사항></p> <p>1. 참여기업은 공고 및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주관/공동참여기관이 제시하는 금액 및 비율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한다.</p> <p>2. 사업기간 내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패키지서비스 사업비 내에서 애로기술 지원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업 체 명 대 표 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 font-weight: bold;">OO서비스운영기관명 귀하</p>				

1. 기업 개요 : **기업명** (최대 5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작성)

구분	'19년
매출액(백만원)	
종업원수(명)	
R&D투자액(백만원)	
주요이력	<input type="checkbox"/> 설립 및 주요이력 <input type="checkbox"/> 회사 주요 이벤트(수상, 수출, 인증·지정 등)

2. 서비스 신청 사유 또는 애로기술(사항)

<작성시 참고> - 제출시 삭제
- 현재의 겪고있는 어려움 및 연구기반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

-
- *
-
- *

3. 지원 요청내용

<작성시 참고> - 제출시 삭제
- 지원을 받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
- 기술의 어떠한 부분, 어떠한 애로 해결이 필요한지와 패키지서비스 지원을 받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
- 제품개발 이후 사업화 전략 제시

지원희망기간	지원희망사업비

*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기간, 사업비,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
-
- *

4. 기대효과

<작성시 참고> - 제출시 삭제
- 지원 이후 개발된 기술, 해결된 애로기술이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제시

-
- *
-
- *

붙임2)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광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광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파산)**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부도·채무불이행)**
 -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6. **(타 사업 중복지원)** 동일 애로사항 해결, 동일 시험·컨설팅 등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적발시, 환수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